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2025호
2025년 1월 2일
목요일

훈 령

○ 훈 령 제 4 2 7 호 남동구 종합상황실 설치·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 안 전 총 괄 과 2

공 고

○ 공 고 제 1 호 지방세 제2차납세자 공시송달 세 무 2 과 17
○ 공 고 제 6 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19

고 시

○ 고 시 제 1 7 8 호 2025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세 무 1 과 21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훈 령

남동구 종합상황실 설치·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5년 1월 2일

남동구 훈령 제427호

남동구 종합상황실 설치·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

남동구 종합상황실 설치·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6조에 따른 남동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상황관리”란 남동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조치 및 지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이란 재난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및 재난안전통신망 등 재난의 관제, 예보, 경보, 전파에 필요한 시설·장비 일체를 말한다.

제2장 구성 및 임무

제3조(구성) ① 상황실은 남동구 재난안전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과 상황근무자로 구성하고 상황실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맡는다. 다만, 휴일 및 야간에는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장이 상황실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책기획국장이 상황실 총괄책임자로서 상황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임무) 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상황실 업무 총괄 및 조정
2.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간부 및 인천광역시 상황실,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에 상황 보고 및 전파
4. 각종 재난상황 종합판단 및 초동조치 지휘
5.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체계 확립 및 유지
6. 재난안전정보시스템 등 상황실 시설·장비의 관리 총괄

② 상황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상황의 신고 접수, 전파, 보고
2. 재난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점검 및 유지보수
3.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난문자 방송 송출
4. 재난안전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5. 시간대별 상황관리 내용 기록
6. 주요 재난상황 정보 파악 및 분석
7. 주요 재난 발생 시 관계부서 직원의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
8.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 수습 부서·기관과 긴밀한 협조
9. 그 밖에 재난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상황실 운영 및 근무

제5조(상황실 운영) ① 상황실은 연중무휴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으로 구성한다.

③ 상황근무자는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실장이 정원의 범위에서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3항 및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달리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2. 명절, 연말연시, 연휴 기간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상황근무자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4.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근무시간 및 복무) ①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업무 시작 30분 전에 출근하여 직전 상황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를 실시하면서 재난관리상황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상황근무자는 당직근무, 지원근무 등에서 제외된다.

④ 상황근무자는 별표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상황실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 상황보고 및 전파

제7조(상황보고 및 전파) ① 상황실장은 주요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고,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 관련 부서 등에 그 사실을 보고 및 전파하여 신속한 대응·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재난 상황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에 해당하는 등 재난 상황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재난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의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부구청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보고서의 종류 및 작성 방법) ① 상황보고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보고서: 매일 1회 작성하는 재난안전 일일 상황보고
2. 수시보고서: 필요 시 주요 재난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작성하는 상황보고

② 정기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수시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작성시기와 서식 및 내용은 상황실장이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각종 상황보고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활용하되, 상황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PS-LTE), 서면, 구두, 전화, 모사전송(FAX),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대체적 수단을 활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체계) ①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상황실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인천광역시 상황실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관계기관의 비상연락망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5장 기록 및 장비관리

제10조(기록관리) ① 상황실장은 주요 재난 상황을 지속적으로 기

록·관리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황실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재난상황보고·전파체계도, 별표의 상황근무자 근무수칙, 주요 재난관련 매뉴얼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장비관리) ① 상황실장은 재난안전시스템의 관리를 총괄하며, 이를 위해 상황실에 재난안전시스템에 대한 관리카드 및 관련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재난안전시스템 및 영상회의 등 연계장비와 통신회선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보안관리

제12조(문서 및 장비보안)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물품 및 장비 등은 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제13조(보안관리)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안전시스템에 대한 정보통신 보안점검을 실시하

여야 한다.

제14조(상황실 출입제한)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 및 재난안전 업무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상황실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7장 인사 및 후생복지 등

제15조(결원보충) 구청장은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인력을 충원하여야 한다.

제16조(현업공무원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요건을 고려하여 상황실 근무자를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된 상황실 근무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훈련)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근무환경 조성)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 내의 각종 전

산·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동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별표]

상황근무자 근무수칙(제6조제4항 관련)

－ 상황실 근무자는 이 수칙을 정확히 알고 지켜야 한다 －

1. 지휘계통과 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다.
2. 준수사항
 - 지정 근무시간 30분 전에 도착, 상황 인수·인계
 - － 상황근무자는 30분 전에 상황실에 도착하여 재난관리팀장에게 근무신고 후, 전 상황근무자로부터 상황을 인수받아 근무
 - － 전 상황근무자는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및 다음 상황근무자에게 모든 상황을 인계하고 재난관리팀장에게 신고 후 퇴청
3. 보고서 작성기준
 - 정기: 재난안전 일일상황 보고서(07시, 17시 기준) 작성
 - 수시: 재난상황 진전에 따라 수시 보고서 작성
4. 상황보고 및 전파
 - 구청장, 부구청장에게는 상황실장이 직접 보고
 - 상급기관 및 관계기관에 긴급 단체문자, 상황전파시스템, 유선 또는 FAX 등을 활용하여 보고·전파
 - 주요재난 발생 등 긴급사안인 경우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5. 상황실 장비 등을 수시 점검·확인하고, 교대 시에는 상황 및 각종 비품의 인계·인수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6. 중앙행정기관, 인천시 상황실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7. 상황실장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8.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9. 상황실은 상황근무자 및 재난안전 관련 업무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한다. 다만, 통제구역은 비인가자의 출입을 금한다.
10. 재난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상황실장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 남동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남동구 재난안전 일일상황보고 - 0000. 00. 00.() 00:00 현재 -	남동구 재난안전상황실 (032-453-0000)
---	---	---

주요 재난안전 관리 상황

□ 재난 발생 현황

계	자연재난(건)				사회재난(건)								
	소계	호우 (대설)	태풍 (강풍)	기 타*	소계	교통 사고	화 재	산 불	해난 사고	환경 오염	붕 괴	폭 발	기 타

□ 피해 상황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계	사 망	실 종	중 상	경 상	건수	금 액

□ 재난상황명

○ 사고개요

- 일시 및 내용 기재

※

○ 조치(전파)사항

-

※

○ 피해현황

-

※

○ 현장사진(필요 시)

☐ 재난상황명

○

-

※

기타/참고

○

-

※

■ 남동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별지제2호서식]

재난상황 보고서

즉시 보고 제 호

수신:

시행일시:

접수일시:

발신: 기관명 및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목:

1. 일시:

2. 장소:

3. 상황 개요(사고 원인)

4. 피해상황

가. 인명피해: 명(사망: , 실종: , 부상:)

※ 별첨: 사망자·실종자 인적 사항

나. 재산피해

다.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 사항

가. 조치사항

나. 동원사항

- 인력: 명(민간인: , 군인: , 경찰관: , 소방공무원: , 공무원:)

- 장비: 대()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 전망 및 대책

작성 방법

1. 사망자·실종자 인적사항은 붙임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⑤란부터 ⑦란까지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남동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남동구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일지

년	월	일	요일	00:00	~	년	월	일	요일	00:00
---	---	---	----	-------	---	---	---	---	----	-------

1. 근무자

주간	소속:	직급:	성명:	야간	소속:	직급:	성명:
----	-----	-----	-----	----	-----	-----	-----

2. 기상특보 발령현황

○ 「기상법」 제13조의2에제1항 따라 기상청장이 발령한 특보

3. 중점 관리사항

○ 행정안전부 등 재난관리주관에서 지시한 중점 관리사항

4. 주요 상황 처리 현황

일시		발신기관	보고수단	내용
접수	보고(전파)	수신기관		
<00 관련>				
00:00		남동구 재난안전상황실	휴대전화	-
	00:00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NDMS	-
<00 관련>				
00:00				-
	00:00			-
<00 관련>				
00:00				-
	00:00			-

5. 기타(주요 언론사항 등)

○ TV, 인터넷뉴스, 언론매체 등을 통해 파악된 사항

※ 상기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상위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인력확보 및 상시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정비하고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 규정을 전부 개정함으로써, 재난 안전 상황관리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남동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에 관한 목적·정의 : (안 제1조~2조)
- 재난안전상황실 구성·운영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제6조)
- 상황보고 및 전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기록 및 장비·보안관리, 그 외에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안 제10조 ~ 제18조)
- 상황근무자 근무수칙 및 상황보고서 등 추가 : (별표, 별지 제 1~3호서식)

공 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남동구 공고 제2025-1호

지방세 제2차납세자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김*철 외 13명
- 서류의 송달지: 내역별첨
- 서류의 명칭: 지방세 체납법인 2차납세의무자 등기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서류의 내용: 지방세 체납법인 2차납세의무자 등기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5. 1. 1. ~ 2025. 1. 16.(16일간)
- 문의사항: 남동구청 세무2과 통합영치팀(032-453-2673)

지방세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월 1일

남 동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역

연번	서류의명칭	세목	등기번호	세액	납세자명	발송지	공고사유
1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통지	지방세 체납	1072895164291	4,921,110	김*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4길 4-9, 305호 3층(이동)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통지	지방세 체납	1072895164292	205,690	강*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C동 1901호(송도동,송도센트로드)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통지	지방세 체납	1072895164293	1,244,510	장*기	경기도 군포시 용호1로5번길 19, 202호(당동)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4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통지	지방세 체납	1072895164294	4,251,700	손*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중앙로1길 25, 204호(신길동)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5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통지	지방세 체납	1072895164295	37,240	최*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35, 103동 901호(논현동,논현유호엔시티 1단지)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6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통지	지방세 체납	1072895164296	4,350,790	윤*남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84번길 29, 904호(망월동)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7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통지	지방세 체납	1072895164297	9,319,330	김*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11번길 16, 106호(구월동,현대빌라)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8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통지	지방세 체납	1072895164299	123,850	김*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90, 103동 1303호 (중동,위브더스테이트)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9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통지	지방세 체납	1072895164302	123,850	김*형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성로 341, 605호(성수동1가)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0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통지	지방세 체납	1072895164303	96,560	김*형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15번길 25, 701호(심곡동)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1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통지	지방세 체납	1072895164304	384,894,000	채*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602, 원룸고시원 402호 (의정부동)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2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통지	지방세 체납	1072895164306	6,897,420	김*남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종로108번길 13-4, 지층(심곡동)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3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통지	지방세 체납	1072895164307	772,480	노*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28번길 27, 201동 2104호 (송도동,글로벌파크 베르디움)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4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통지	지방세 체납	1072895164308	36,168,100	김*건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93번길 9, 1동 205호 오피리아 (당하동)(당하동)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5-6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처 분 명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 2. ~ 2025. 1. 17.
3. 공고대상 : 150허6789 외 17대 (별첨)
4.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또는 게시판)
5.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공고하니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자동차 사용자라 한다) 및 실제운행자는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운행정지 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 자동차 사용자와 실제운행자가 다르면서 자동차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 등(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체납, 과속·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등 의 지속)을 하고,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2의2호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6. 문의처 :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7)

2025. 1. 2.

남 동 구 청 장



운 행정지자동차현황 2024년 12월분(2차)

구분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등록일	등록사유
1	150허6789	그랜저(GRANDEUR)	신**	2024.12.30	소유자 요청
2	150하7167	쏘나타(SONATA)	신**	2024.12.30	소유자 요청
3	21너3065	Rolls Royce Spectre	하**	2024.12.27	소유자 요청
4	398서1794	A7 55 TFSI quattro	폭**	2024.12.26	소유자 요청
5	128호1928	A4 40 TFSI	폭**	2024.12.26	소유자 요청
6	145우7084	BMW 520i	신**	2024.12.26	소유자 요청
7	169허4741	Tiguan Allspace	폭**	2024.12.26	소유자 요청
8	232가4041	Arteon 2.0 TDI	폭**	2024.12.26	소유자 요청
9	256루2528	Mercedes-Benz E 300 4MATIC	신**	2024.12.24	소유자 요청
10	172호4758	스파크 1.0	신**	2024.12.23	소유자 요청
11	145허8125	Q7 45 TDI quattro	폭**	2024.12.23	소유자 요청
12	128하1964	Q8 50 TDI quattro	폭**	2024.12.23	소유자 요청
13	345수1512	A5 Sportback 40 TDI quattro	폭**	2024.12.23	소유자 요청
14	386서5005	A8L 50 TDI quattro	폭**	2024.12.23	소유자 요청
15	인천34가3649	쏘나타III1.8	전**	2024.12.19	소유자 요청
16	162부2744	쏘나타(SONATA)	염**	2024.12.18	소유자 요청
17	225두3722	Mercedes-AMG GLE 53 4MATIC +	메**	2024.12.18	소유자 요청
18	275어8725	A6 45 TFSI quattro	폭**	2024.12.18	소유자 요청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4-178호

2025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2025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남 동 구 청 장

1.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항목(127,402종)

구분	결정항목	구분	결정항목
차량	102,550종	시설물	2,636종
기계장비	13,121종	입목	97종
선박	140종	어업권	238종
항공기	250종	회원권	4,190종
시설	3,950종	지하자원	230종

2. 세부 결정사항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규정한 사항(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적용한 가액으로, 2025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 남동구 홈페이지 게시물 참조

3. 기 타

- 시가표준액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세무1과 (032-453-2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내용

2024. 12.



남 동 구
(세무1과)

||| 목 차 |||

I . 시가표준액 개요 1

II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1

III .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변경사항 2

<붙임>

기타물건 잔가율 등 3

'25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I 시가표준액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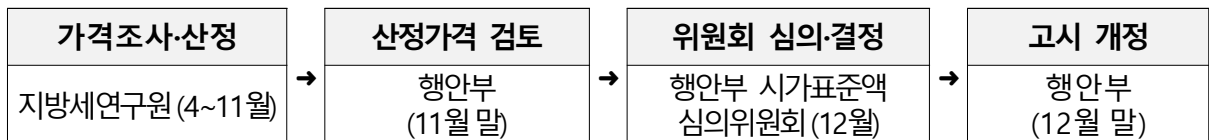
- (개념) '시가표준액'이란 시가(時價) 그 자체는 아니지만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 *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산정방식) 건축물과 기타물건은 행안부 산정방식에 따라 남동구청장이 결정·고시하며, 토지와 주택은 국토부장관이 공시*

* ① 토지·단독주택 : 국토부의 표준가격을 토대로 남동구청장이 개별가격 공시

② 공동주택 : 모든 공동주택의 개별가격을 국토부장관이 공시

- (결정절차)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산정*한 가격을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하여 행안부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 심의(12월) 후 결정·고시(12월말)

*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4년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출연사업)」 수행



II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 물건별(차량, 기계장비 등 10개 유형) 행안부에서 고시하는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여 계산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각 물건별 기준가격*	×	경과연수별 잔가율 등
---------------	---	-------------	---	-------------

* 차량, 기계장비 등 기타물건의 종류·형식별 제도가격,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

- 국토부의 차량·기계장비 출고가액, 제조사 판매가격, 거래·수입·제조 가격 등을 고려하여 기준가격 산정(지방세연구원 가격조사 수행)

III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변경 사항

- '24년 123,796건 대비 3,606건(2.9% ↑) 증가한 127,402건 기준가격 산정(별첨)

〈기타물건별 가격조사 결과〉

구분	2024년 조사목록				증감	가격변동건수			
	2023.1.1. 고시목록	신규	삭제	계		상승 (A)	하락 (B)	보합 (C)	계 (D)
계	123,796	3,702	96	127,402	3,606	5,366	624	121,412	127,402
차량	99,299	3,273	22	102,550	3,251	-	3	102,547	102,550
기계장비	13,036	90	5	13,121	85	15	13	13,093	13,121
선박	140	-	-	140	-	140	-	-	140
항공기	250	-	-	250	-	-	-	250	250
시설	3,860	143	53	3,950	90	621	25	3,304	3,950
시설물	2,636	-	-	2,636	-	2,636	-	-	2,636
입목	97	-	-	97	-	44	49	4	97
어업권	238	-	-	238	-	222	16	-	238
회원권	4,010	196	16	4,190	180	1,685	518	1,987	4,190
지하자원	230	-	-	230	-	3	-	227	230

○ '25년 기타물건(차량 등) 경과연수별 잔가율 등은 '24년과 동일

참고

기타물건 잔가율 등(훈령 별표 12~18) ※ 전년과 동일

[별표 12] 시설의 잔가율표

구분1	구분2	구분3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레저시설	수영장	철근콘크리트조	40년	정액법	10%	0.0225
		콘크리트조	30년	정액법	10%	0.03
		기타조	40년	정액법	10%	0.0225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10년	정액법	10%	0.09
		기타스케이트장	10년	정액법	10%	0.09
	골프연습장	운동시설	5년	정액법	10%	0.18
		안전시설	3년	정액법	10%	0.3
		철탑	30년	정액법	10%	0.03
	전망대	목재	15년	정액법	10%	0.06
		철재	40년	정액법	10%	0.0225
		기타	40년	정액법	10%	0.0225
	옥외스탠드	철근콘크리트조	40년	정액법	10%	0.0225
		콘크리트조	30년	정액법	10%	0.03
		철골조	30년	정액법	10%	0.03
		목조	10년	정액법	10%	0.09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각종 오락용시설	10년	정액법	10%	0.09
		물놀이시설				
		- 철근콘크리트조	40년	정액법	10%	0.0225
		- 콘크리트조	30년	정액법	10%	0.03
		- 기타조	40년	정액법	10%	0.0225
		궤도(삭도)	10년	정액법	10%	0.09
저장시설	수조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한 수조				
		- 철판탱크	20년	정액법	10%	0.045
		- 철평탱크	40년	정액법	10%	0.0225
		- 철근콘크리트조탱크	40년	정액법	10%	0.0225
		- 시멘트벽돌조탱크	30년	정액법	10%	0.03
		- 화학제품(FRP 등)	40년	정액법	10%	0.0225
		- 토조및 합성고무제품	40년	정액법	10%	0.0225
		- SMC	40년	정액법	10%	0.0225

구분1	구분2	구분3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 스테인레스(STS)	40년	정액법	10%	0.0225
		- 지하암거	40년	정액법	10%	0.0225
		내수면 양만·양식을 위한 수조				
		- 철근콘크리트조	30년	정액법	10%	0.03
		- 시멘트벽돌조	20년	정액법	10%	0.045
		- 철판원형조	18년	정액법	10%	0.05
		- 기타합성조	10년	정액법	10%	0.09
	저유조	철판	21년	정액법	10%	0.0429
		철근콘크리트	40년	정액법	10%	0.0225
저장 시설	저유조	기 타	30년	정액법	10%	0.03
		LNG특 수 저 장 조	40년	정액법	10%	0.0225
		지 하 암 거	40년	정액법	10%	0.0225
	사일로	시 멘 트 벽 돌 조	30년	정액법	10%	0.03
		철 근 콘 크 리 트 조	40년	정액법	10%	0.0225
	저장조	철판탱크	21년	정액법	10%	0.0429
		철근콘크리트(일반)	40년	정액법	10%	0.0225
		철근콘크리트(방사성폐기물)	100년	정액법	10%	0.009
		아연도금강판	15년	정액법	10%	0.06
도크 및 접안 시설	도크	건도크(dry dock)				
		- 철 근 콘 크 리 트 조	40년	정액법	10%	0.0225
		부도크(floating dock)				
		- 철 및 기 타 금 속 조	20년	정액법	10%	0.045
	조선대	조선대	30년	정액법	10%	0.03
	송유관	주 철 관	30년	정액법	10%	0.03
		강 철 관	20년	정액법	10%	0.045
		화 학 제 품 관	40년	정액법	10%	0.0225
도관 시설	가스관	폴리에틸렌피복강관(PLP)	20년	정액법	10%	0.045
		초저온스테인레스관	20년	정액법	10%	0.045
		화학제품(PE)관	20년	정액법	10%	0.045
	열수송관	강 관	20	정액법	10%	0.045
급배수 시설	송수관	주 철 관	30년	정액법	10%	0.03
		강 철 관	20년	정액법	10%	0.045

구분1	구분2	구분3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화 학 제 품 관	40년	정액법	10%	0.0225
	옥외 하수도 시설	맨홀(철근콘크리트)	40년	정액법	10%	0.0225
		암거(석조)	35년	정액법	10%	0.0257
		오지관(토조)	15년	정액법	10%	0.06
		시멘트관	15년	정액법	10%	0.06
		흙관(철 및 기타금속)	30년	정액법	10%	0.03
		기타(화학제품 등)	40년	정액법	10%	0.0225
	지하수 시설	기 계 관 정	30년	정액법	10%	0.03
	기타시설	철근콘크리트 수로터널	50년	정액법	20%	0.016
		철근콘크리트 수압철관	50년	정액법	20%	0.016
		강철관	50년	정액법	20%	0.016
	복개설비	철 근 콘 크 리 트 조	40년	정액법	10%	0.0225
		콘 크 리 트 조	15년	정액법	10%	0.06
		철 및 기 타 금 속 조	30년	정액법	10%	0.03
		기 타 조	40년	정액법	10%	0.0225
에너지 공급 시설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 시설	저 장 조	19년	정액법	10%	0.0473
		주 유 기	12년	정액법	10%	0.075
		LPG저장조	18년	정액법	10%	0.075
		CNG 저장조	15년	정액법	10%	0.075
		가 스 주 입 기	10년	정액법	10%	0.075
		CNG 압축기	10년	정액법	10%	0.075
	환경친화 적 자동차 충전시설	전 기 차 충 전 기	10년	정액법	10%	0.09
		수 소 저 장 용 기	15년	정액법	10%	0.06
		수 소 압 축 기	10년	정액법	10%	0.09
		수 소 충 전 기	10년	정액법	10%	0.09
	송전철탑	345천볼트	30년	정액법	10%	0.03
		765천볼트	30년	정액법	10%	0.03
기타 시설	잔교	철 골 콘 크 리 트 조	40년	정액법	10%	0.0225
		철 근 콘 크 리 트 조	40년	정액법	10%	0.0225
		콘 크 리 트 조	30년	정액법	10%	0.03
		철 및 기 타 금 속 조	40년	정액법	10%	0.0225
		석 조	40년	정액법	10%	0.0225
		목 조	15년	정액법	10%	0.06
		기 타	40년	정액법	10%	0.0225
	철골조립식 (자주식) 주차시설	아연도금철골조	18년	정액법	10%	0.05

구분1	구분2	구분3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페인트칠골조	15년	정액법	10%	0.06
		옥외 기계식 주차시설	15년	정액법	10%	0.06
		방송중계탑(철 탑)	30년	정액법	10%	0.03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30년	정액법	10%	0.03
		자동세차시설	10년	정액법	10%	0.09

[별표 13] 시설물의 잔가율표

구분1	구분2	내용연수	감가방법	잔존율	감가율
엘리베이터	승객용 엘리베이터	18년	정액법	10%	0.05
	화물용 엘리베이터	18년	정액법	10%	0.05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18년	정액법	10%	0.05
	덤웨어터	18년	정액법	10%	0.05
	침대용 엘리베이터	18년	정액법	10%	0.05
에스컬레이터		18년	정액법	10%	0.05
기타 승강시설		18년	정액법	10%	0.05
휠체어 리프트		18년	정액법	10%	0.05
20kw이상의 발전시설		15년	정액법	10%	0.06
온수 및 열 공급시설	난방용	15년	정액법	10%	0.06
	욕탕용	15년	정액법	10%	0.06
7,560kcal급 이상의 에어컨		15년	정액법	10%	0.06
부 착 된 금 고		18년	정액법	10%	0.05
교환 시설	자동식교환기	10년	정액법	10%	0.09
	간이교환설비	10년	정액법	10%	0.09
구내의 변전·배전 시설	구 내 수 전 시 설	15년	정액법	10%	0.06
	변 압 기	15년	정액법	10%	0.06

[별표 14] 선박 내용연수 및 잔가율표

□ 내용연수 및 감가율

가. 선 체

용도	선 종 별		내용연수	감가상각법	감가율	잔존율
여객선	강	선	20년	정률법	0.109	10%
	경	금 속 선	20년	정률법	0.109	10%
	합	성 수 지 선(F.R.P)	20년	정률법	0.109	10%
	목	선	12년	정액법	0.075	10%
화물선	강 선	일 반 화 물 선	20년	정률법	0.1045	11%
		유 조 선	20년	정률법	0.109	10%
		특 수 화 물 선	14년	정률법	0.152	10%
		L N G 운 반 선	20년	정률법	0.109	10%
	합	성 수 지 선(F.R.P)	20년	정률법	0.109	10%
	목	선	14년	정액법	0.0643	10%
	합	성 수 지 선(F.R.P)	20년	정률법	0.109	10%
어선	강	선	18년	정률법	0.120	10%
	경	금 속 선	16년	정률법	0.134	10%
	합	성 수 지 선(F.R.P)	14년	정률법	0.152	10%
	목	선	12년	정액법	0.075	10%
예인선	강	선	16년	정률법	0.134	10%
	목	선	12년	정액법	0.075	10%
부선	강	선	16년	정률법	0.134	10%
	시	멘 트 선	10년	정액법	0.09	10%
기타선	강	선	16년	정률법	0.134	10%
	경	금 속 선	12년	정률법	0.175	10%
	합	성 수 지 선(F.R.P)	12년	정률법	0.175	10%
	목	선	10년	정액법	0.09	10%
수상 레저 기구	잠	수 유 램 선	16년	정률법	0.134	10%
	요	트	14년	정률법	0.152	10%
	고	무 보 트	8년	정액법	0.1125	10%
	모	터 보 트	8년	정액법	0.1125	10%
	유	선	10년	정액법	0.09	10%
	수	상 스 쿨 터	8년	정액법	0.1125	10%
	수	상 오 토 바 이	8년	정액법	0.1125	10%
	카	누	8년	정액법	0.1125	10%
	카	약	8년	정액법	0.1125	10%

나. 기 관

구 분	내용연수	감가상각법	감가율	잔 존 율	비 고
기 관	15년	정률법	0.142	10%	-

□ 잔가율표

가. 선박 잔가율표(정률법)

연간감가 율	0.175	0.152	0.134	0.120	0.109	0.1045
내용연수 경과연수	12년	14년	16년	18년	20년*	20년**
1	0.825	0.848	0.866	0.88	0.891	0.896
2	0.681	0.72	0.75	0.774	0.794	0.802
3	0.562	0.611	0.649	0.681	0.708	0.718
4	0.464	0.518	0.562	0.599	0.631	0.643
5	0.383	0.439	0.487	0.527	0.562	0.576
6	0.316	0.373	0.422	0.464	0.501	0.516
7	0.261	0.316	0.365	0.408	0.447	0.462
8	0.215	0.268	0.316	0.359	0.398	0.414
9	0.177	0.228	0.274	0.316	0.355	0.37
10	0.146	0.193	0.237	0.278	0.316	0.332
11	0.12	0.164	0.205	0.245	0.282	0.297
12	0.1	0.139	0.178	0.216	0.251	0.266
13	이하동일	0.118	0.154	0.19	0.224	0.238
14		0.1	0.133	0.167	0.2	0.213
15		이하동일	0.115	0.147	0.178	0.191
16			0.1	0.129	0.158	0.171
17			이하동일	0.114	0.141	0.153
18				0.1	0.126	0.137
19				이하동일	0.112	0.123
20					0.1	0.11

* 잔존율 10% 기준 / ** 잔존율 11% 기준

나. 선박 잔가율표(정액법)

연간감가 율	0.1125	0.09	0.0818	0.075
내용연수 경과연수	8년	10년	11년	12년
1	0.8875	0.91	0.918	0.925
2	0.775	0.82	0.836	0.85
3	0.6625	0.73	0.755	0.775
4	0.55	0.64	0.673	0.7
5	0.4375	0.55	0.591	0.625
6	0.325	0.46	0.509	0.55
7	0.2125	0.37	0.427	0.475
8	0.1	0.28	0.346	0.4
9	이하동일	0.19	0.264	0.325
10		0.1	0.182	0.25
11		이하동일	0.1	0.175
12			이하동일	0.1

다. 기관 잔가율표(정률법)

경과연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5년 초과
잔가율	0.858	0.736	0.631	0.541	0.464	0.398	0.341	0.293	0.251	0.215	0.184	0.158	0.136	0.117	0.100	0.100

[별표 15] 차량 잔가율표

가. 비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구분		내용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승용	국산	20년	0.826	0.725	0.614	0.518	0.437	0.368	0.311	0.262	0.221	0.186	0.157	0.132	0.112	0.094	0.079	0.067	0.063	0.06	0.057	0.053	0.050
	외산	20년	0.842	0.729	0.605	0.500	0.412	0.340	0.281	0.232	0.172	0.142	0.117	0.097	0.080	0.066	0.054	0.050	0.048	0.046	0.044	0.042	0.040
승합		20년	0.810	0.726	0.609	0.510	0.426	0.357	0.298	0.250	0.215	0.184	0.157	0.134	0.113	0.096	0.081	0.067	0.058	0.056	0.054	0.052	0.050
화물		20년	0.761	0.671	0.597	0.510	0.426	0.357	0.298	0.259	0.229	0.200	0.172	0.149	0.128	0.110	0.098	0.086	0.065	0.063	0.062	0.060	0.058

나. 그 외 차량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차종	용도	내용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승용자동차	영업용	4년	0.779	0.618	0.348	0.196	0.100	이하 동일		
승합자동차	영업용	7년	0.820	0.644	0.514	0.367	0.288	0.215	0.170	0.100
화물자동차	영업용	7년	0.702	0.561	0.500	0.377	0.280	0.242	0.172	0.100
이륜자동차	영업 및 비영업용	6년	0.717	0.562	0.455	0.316	0.215	0.147	0.100	이하 동일

다. 분리형 캠퍼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구분	내용연수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0년 이후
분리형 캠퍼	10년	0.9	0.80	0.64	0.51	0.41	0.33	0.26	0.21	0.17	0.13	0.11	0.05

[별표 16] 차량 용도별감가상각률표

가. 승용자동차 용도별 감가상각률

경과연수	비영업용		영업용
	국산	외산	
0	-0.174	-0.158	-0.221
1	-0.122	-0.134	-0.207
2	-0.153	-0.170	-0.437
3	-0.156	-0.174	-0.437
4	-0.156	-0.176	-0.490
5	-0.158	-0.175	0
6	-0.155	-0.174	0
7	-0.158	-0.174	0
8	-0.156	-0.259	0
9	-0.158	-0.174	0
10	-0.156	-0.176	0
11	-0.159	-0.171	0
12	-0.152	-0.175	0
13	-0.161	-0.175	0
14	-0.160	-0.182	0
15	-0.152	-0.074	0
16	-0.060	-0.040	0
17	-0.048	-0.042	0
18	-0.050	-0.043	0
19	-0.070	-0.045	0
20	-0.057	-0.048	0

나. 승합 및 화물자동차 용도별 감가상각률

경과연수	승합		화물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0	-0.190	-0.180	-0.239	-0.298
1	-0.104	-0.215	-0.118	-0.201
2	-0.161	-0.202	-0.110	-0.109
3	-0.163	-0.286	-0.146	-0.246
4	-0.165	-0.215	-0.165	-0.257
5	-0.162	-0.253	-0.162	-0.136
6	-0.165	-0.209	-0.165	-0.289
7	-0.161	-0.412	-0.131	-0.418
8	-0.140	0	-0.116	0
9	-0.144	0	-0.127	0
10	-0.147	0	-0.140	0
11	-0.146	0	-0.134	0
12	-0.157	0	-0.141	0
13	-0.150	0	-0.141	0
14	-0.156	0	-0.109	0
15	-0.173	0	-0.122	0
16	-0.134	0	-0.244	0
17	-0.034	0	-0.031	0
18	-0.036	0	-0.016	0
19	-0.037	0	-0.032	0
20	-0.038	0	-0.033	0

[별표 17] 기계장비 잔가율표

대 상	내용 연수	경 과 연 수																	
		1년 미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터널용고소작업차, 수목이식기, 트럭지게차	10	0.832	0.708	0.637	0.545	0.439	0.349	0.290	0.231	0.184	0.146	0.100	이하 동일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천공기, 선별기, 콘크리트믹서트레일 러	13	0.871	0.768	0.709	0.603	0.543	0.455	0.381	0.318	0.279	0.234	0.196	0.165	0.138	0.100	이하 동일			
불도저, 기중기,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벤텡 플랜트,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쇄석기, 공기압축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노면측정장비, 스크레이퍼, 향타밧향발기, 아스팔트콘크리트재 생기	15	0.885	0.793	0.736	0.644	0.603	0.511	0.439	0.376	0.323	0.290	0.249	0.214	0.183	0.158	0.135	0.100	이하 동일	
모터그레이더, 타워크레인	17	0.904	0.831	0.763	0.680	0.627	0.551	0.488	0.431	0.382	0.346	0.307	0.272	0.242	0.215	0.191	0.162	0.131	0.100

[별표 18] 항공기 내용연수 및 잔가율표

☐ 내용연수표

최대이륙중량	내용연수	최대이륙중량	내용연수
100,000kg 초과		5,700kg 초과,	
50,000kg 초과,	20년	13,650kg 이하	11년
100,000kg 이하	15년	1,500kg 초과,	10년
13,650kg 초과,	12년	5,700kg 이하	9년
50,000kg 이하		1,500kg 이하	

☐ 잔가율표

내용연수 경과연수	9년	10년	11년	12년	15년	20년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년	0.774	0.794	0.811	0.825	0.858	0.891
2년	0.599	0.631	0.658	0.681	0.736	0.794
3년	0.464	0.501	0.534	0.562	0.631	0.708
4년	0.359	0.398	0.433	0.464	0.541	0.631
5년	0.278	0.316	0.351	0.383	0.464	0.562
6년	0.215	0.251	0.285	0.316	0.398	0.501
7년	0.167	0.200	0.231	0.261	0.341	0.447
8년	0.129	0.158	0.187	0.215	0.293	0.398
9년	0.100	0.126	0.152	0.178	0.251	0.355
10년	이하동일	0.100	0.123	0.147	0.215	0.316
11년		이하동일	0.100	0.121	0.185	0.282
12년			이하동일	0.100	0.158	0.251
13년				이하동일	0.136	0.224
14년					0.117	0.200
15년					0.100	0.178
16년					이하동일	0.158
17년						0.141
18년						0.126
19년						0.112
20년						0.100